

1. 제정이유

글로벌 공급과잉, 통상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철강산업의 저탄소·고부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2025. 12. 16, 법률 제21202호)됨에 따라 동 법 및 동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철강산업 및 재생철자원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제3조)

나. 실증시험·성능검증 지원신청서, 경쟁력강화 계획서, 저탄소철강 인증신청서, 저탄소철강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저탄소철강특구 지정신청서,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지정신청서, 철강산업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신청서, 특성화대학등 지정신청서 등 각종 서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7조, 제9조~제12조)

다. 저탄소철강 인증을 받은 자와 저탄소철강 인증기관이 보관해야하는 서류와 보관 방식을 규정함(안 제8조)

라. 저탄소철강 인증 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입법예고 전

2) 규제심사 전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철강산업의 범위)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제철, 제강 및 합금철 제조업
2. 철강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3. 철강관 제조업
4.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처리 강재 제조업
5. 그 밖에 철강 관련 제품의 제조 및 가공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산업

제3조(재생철자원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금속류”란 다음 각 호의 금속류를 말한다.

1. 철강재 생산·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철스크랩
2. 사용 후 폐기된 제품, 구조물 등에서 회수한 철스크랩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금속류 제4조(실증시험·성능검증 지원신청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라 실증시험·성능검증 관련 지원을 신청하려는 수요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실증시험·성능검증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철강기술의 개발 배경·연혁, 원리·성능 및 경제성 등을 적은 서류
2. 국내외의 사용실적(사용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국내외의 산업재산권 출원·보유(철강 관련 산업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증명하는 서류
3. 해당 철강기술이 공급기업이 개발한 기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특허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문기관이 실시한 선행기술 조사보고서
5. 실증시험·성능검증의 항목·횟수 및 방법, 이와 관련한 원료·재료 또는 시료의 종류, 국내 가동 시험성적서 등 신청인이 자체 평가한 내용을 적은 서류
6. 실증시험·성능검증을 받으려는 사항 및 현장평가 방법을 적은 서류(기술검증의 경우만 해당한다)
7. 그 밖에 실증시험·성능검증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5조(경쟁력강화 계획서)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경쟁력강화 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6조(저탄소철강 인증신청서 및 인증서)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저탄소철강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의 저탄소철강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증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저탄소철강 생산공정확인 신청서 및 신청기술설명서
2. 생산증명서 또는 품질검사증명서 등 저탄소철강제품의 생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저탄소철강 인증신청서를 제출받은 인증운영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및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3. 공장등록증명서

③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저탄소철강 인증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7조(저탄소철강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및 인증기관 지정서)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저탄소철강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사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계획서
3. 영 제30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인증기관 지정심사를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③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8조(관련 문서의 비치·보존)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저탄소철강 인증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 주체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1. 저탄소철강 인증 신청 서류 사본
2. 저탄소철강 인증 제품의 거래에 관한 자료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저탄소철강 인증 신청 서류 등 인증 심사에 관한 문서를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 주체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제9조(저탄소철강특구 지정신청서)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저탄소철강 특구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10조(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이하 “전문기업”이라 한다)으로 지정 받으려는 기업은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8호서식의 전문기업 지정신청서에 영 제38조에 따른 전문기업 지정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③ 영 제39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업 지정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제11조(철강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철강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43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10호서

식의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
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전문인력 양성·훈련사업 계획서
3. 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전문인력에 관한 명세서 및 운
용계획서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
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③ 영 제43조제3항에 따른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
다.

제12조(철강산업 특성화대학등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① 영 제45조제2
항에 따른 철강산업 특성화대학, 특성화대학원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이하 “철강산업특성화대학등”이라 한다)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45조제3항에 따른 철강산업특성화대학등 지정서는 별지 제1
3호서식과 같다.

제13조(수수료) ① 법 제42조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저탄소철강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법 제19조에 따른 인증기관에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수료는 현금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 기간, 반환 사유, 반환 범위 등 수수료
의 납부 및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실증시험·성능검증 지원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청 기업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소재지		
신청 개요	실증시험·성능검사 개요		
	지원 요청내용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실증시험·성능검증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실증시험·성능검사 대상 기술의 개발 배경·연혁, 원리·성능 및 경제성 등을 적은 서류 2. 국내외의 사용실적(사용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국내외의 산업재산권 출원·보유 (해당 철강 관련 산업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를 증명하는 서류 3. 해당 철강기술이 공급기업이 개발한 기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특허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문기관이 실시한 선행기술 조사보고서 5. 실증시험·성능검증의 항목·횟수 및 방법, 이와 관련한 원료·재료 또는 시료의 종류, 국내 가동 시험성적서 등 신청인이 자체 평가한 내용을 적은 서류 6. 실증시험·성능검증을 받으려는 사항 및 현장평가 방법을 적은 서류(기술검증의 경우만 해당 합니다) 7. 그 밖에 실증시험·성능검증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신청인 처리기관: 산업통상부

협력모델 경쟁력강화계획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	------	--	------

신청인 (A)	회사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주소		기업 구분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수요기업 [] 공급기업 [] 기타()	
	대표자	전화번호	전자우편	
	책임자	전화번호	전자우편	

신청인 (B)	회사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주소		기업 구분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수요기업 [] 공급기업 [] 기타()	
	대표자	전화번호	전자우편	
	책임자	전화번호	전자우편	

경쟁력강화 주요 내용	품목명	품목별 목표	향후 계획
	1.		
	2.		
	3.		
	필요한 지원사항 [] 공동기술개발 [] 공동기반구축 [] 공동투자 [] 적합성평가 [] 금융지원 [] 규제개선 [] 기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협력모델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A)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신청인(B)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귀하

첨부서류	1.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각 호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적은 서류
	2. 그 밖에 협력모델 선정 심사를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

저탄소철강 인증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청인	① 상호(법인명)		② 대표자 성명	
	③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④ 소재지	본사	담 당 자: 전 화: 전자우편:	
		공장	담 당 자: 전 화: 전자우편:	
신청내용	⑤ 인증대상품목			
	⑥ 인 증 용 도			

「철강산업 경쟁력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저탄소철강의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증운영기관의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저탄소철강 생산공정확인 신청서 및 신청기술설명서 2. 생산증명서 또는 품질검사증명서 등 저탄소철강제품의 생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담당 직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3. 공장등록증명서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 중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사본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①번부터 ④번은 저탄소철강 인증서 신청 사업체의 인적사항과 현황에 관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 ⑤번은 생산된 저탄소철강의 인증대상품목에 대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 ⑥번은 저탄소철강 인증서의 사용용도에 대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확인	→	인증서 발급
신청인		인증운영기관		인증운영기관		신청인

제 호

저탄소철강 인증서

- 1. 상 호:
- 2. 사업자등록번호:
- 3. 대 표 자 성 명:
- 4. 소 재 지(본사):
- 5. 소 재 지(공장):
- 6. 유효 기 간:
- 7. 인 증 내 용: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저탄소철강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인증기관의장 직인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 인증운영기관
저탄소철강 [] 인증시험평가기관 지정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기관	① 기관명(법인명)			② 대표자 성명	
	③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④ 소 재 지				
	⑤ 기관대표전화				
	⑥ 설립근거				
	⑦ 설립목적				
	⑧ 설립연월일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저탄소철강 인증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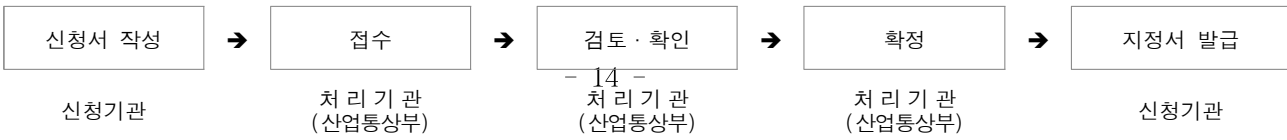
신청인 제출서류	1. 정관 사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계획서 3. 「철강산업 경쟁력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인증기관 지정심사를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직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인 사업자등록증 기재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지정번호 제 호

저탄소철강 [] 인증운영기관 지정서
[] 인증시험평가기관

1. 기 관 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2. 성명(대표자) :
3. 주 소 :
4. 설 립 근 거 :
5. 설 립 목 적 :
6. 설 립 연월일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 기관을
저탄소철강 인증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저탄소철강특구 지정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청기관	기관명			대표자	
	주소				
	전화			전자우편	
신청내용	특구의 명칭				
	지정 목적 및 필요성				
	위치				
	소속 단지명				
	신청특구 면적 m ²			저탄소철강산업 면적 m ²	
	주요 입주업종				

「철강산업 경쟁력강화 및 탄소중립을 위한 특별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저탄소철강특구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철강산업 경쟁력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른 특구 육성계획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 수	→	서류 검토 처리기관: 산업통상부	→	철강산업 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심의	→	지정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지정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청기업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소재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신청기업 첨부서류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전문기업 지정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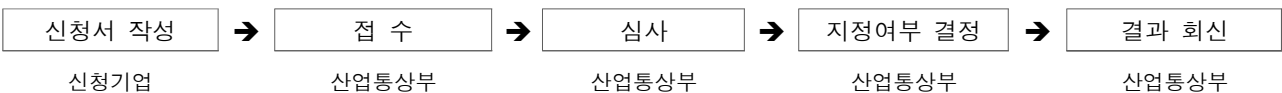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인 사업자등록증 기재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 절차



지정번호 제 호

재 생 철 자 원 가 공 전 문 기 업 지 정 서

1. 기 업 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2. 대 표 자 :
3. 소 재 지 :

위 기업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에 따라 위 기업을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철강산업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청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소재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3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철강산업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신청인 첨부서류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전문기술인력 양성·훈련사업 계획서 3. 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전문인력에 관한 명세서 및 운용계획서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인 사업자등록증 기재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심사	➔	지정여부 결정	➔	결과 회신
신청기관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

지정번호 제 호

철강산업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서

1. 기관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2. 대표자 :
3. 소재지 :

「철강산업 경쟁력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3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 기관을 철강산업 전문인력양성 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철강산업 특성화대학등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사업명				
주관기관	국문	주소		
	영문	사업자등록번호		
수행 책임자	한글 성명	영문 성명		
	소속 기관 / 부서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총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사업비 (백만원)	구 분	정부 출연금	민간 부담금	계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계			
위탁 수행기관	위탁사업비 총계 (백만원)			
참여 기관명				

「철강산업 경쟁력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철강산업 특성화대학 등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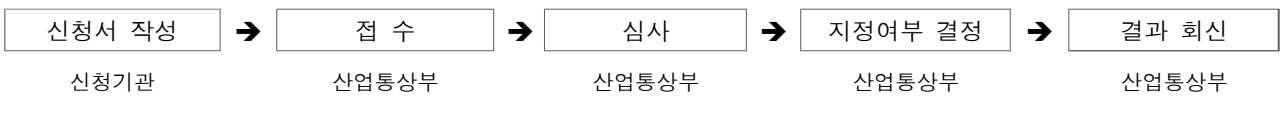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기관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철강산업 경쟁력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처리 절차



지정번호 제 호

철강산업 특성화대학등 지정서

1.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2. 대표자 :
3. 소재지 :

「철강산업 경쟁력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 기관을 철강산업 특성화대학(□대학, □대학원, □고등학교)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